

의안번호	2206641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2.12.
추 계 번호	24D59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선거구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700만원, 2030년 9,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8,1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연평균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시 결선투표 실시 (안 제188조제1항 등)	87	—	—	—	94	181	36

주: 1.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시 결선투표 실시(안 제188조제1항 등)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기존 공직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사례를 고려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1개의 선거구에서 최고득표자 2인 발생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8조제1항 (지역구국회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188조제1항),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제19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제191조제1항)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 결선투표실시하는 경우에 선거기간은 14일(결선투표시 총 28일로 규정하여 본 선거기간 14일을 제외하면 결선투표의 선거기간은 14일) - 결선투표운동기간은 결선투표기간 개시일부터 결선투표일 전일까지 -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14일이 되는 날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연설: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8조제1항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의 결정·공고·통지) 등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의 1개 선거구(선거인수 6,415명)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최고득표자 수가 2인이었던 사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8건 발생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재·보궐선거에서는 최고득표자 수가 2인 이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될 확률이 낮아 본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그 동안 8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8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추계기간 동안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1개 선거구(선거인수 6,415명)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었던 선거구와 선거인수

선거	선거종류	시도	구시군	선거인수(명)
제1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강원	정선군	3,527
제1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전북	남원시	2,547
제1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전남	영광군	646
제1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전남	신안군	1,784
제1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경남	통영시	5,322
제2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전남	화순군	2,727
제3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경기	동두천시	5,950
제8회 지선	구·시·군의원선거	전남	나주시	28,820
평균				6,41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최고 득표자 2인 이상 시, 이하 “결선투표”라 한다)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비용과 선거비용 보전액
 - 결선투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청소송 및 예비경비는 제외하기로 함
 - 선거관리비용은 투·개표관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선거관리일반, 제도·홍보 및 단속에 관한 비용을 포함
 - 개정안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과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의 차이만큼 결선투표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²⁾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 1개의 선거구(선거인수 6,415명)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결선투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관리비용과 선거비용 보전액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2)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선투표 시 제한액으로 보며 결선투표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이 증가하여 100%까지 보전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 또한 결선투표도입에 따라 결선투표에 대한 선거비용보전관련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추계에서는 기존 지방선거에서의 보전액을 기준으로 추계

- (선거관리비용) 개정안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 발생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비용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700만원, 2030년 5,000만원으로 예상
- 투·개표 관리비용의 경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기준 2,453억 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결선투표 실시가 필요한 선거구의 선거인 수 비율($0.01\% = 6,415\text{명} \div 44,303,449\text{명}$) 적용하여 산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비용의 경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기준 51억 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총 토론회 개최 횟수(356회,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로 나누고 결선투표 실시가 필요한 선거구 수(1개)를 곱하여 산출
 - 선거관리일반, 계도·홍보 및 단속비용의 경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기준 2,027억 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현행 선거관리 경비의 배정 시기(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대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13일) 비율(17.8%)과 결선투표 실시가 필요한 선거구(1개소)의 선거인 수 비율(0.01%)을 곱하여 산출

[표 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선투표 시 선거관리비용 부문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년과 2030년

구분		본선 선거관리비용 추정 (억원)			산출과정	추가재정소요 (백만원)	
		2022	2026	2030		2026	2030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699	—	—	투·개표관리×0.01%	27	29
	투·개표관리	1,754					
	소계	2,45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51	56	61	운영비÷356회×1개	16	17
선거관리일반, 계도·홍보 및 단속	선거관리일반	625	—	—	선거관리일반 등×17.8%×0.01%	4	4
	선거운동관리	619					
	계도·홍보	127					
	위법행위단속	656					
	소계	2,027	2,242	2,426			
합계						47	5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선거비용 보전액) 개정안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비용 보전액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00만원, 2030년 4,400만원으로 예상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고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이었던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해당함

[표 4]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현황: 2022년

(단위: 백만원)

	1인당 평균 제한액	1인당 평균 보전액
자치구·시·군의회의원	47	2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1인당 1,800만원(=4,700만원 - 2,900만원)
-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면 2026년 2,000만원, 2030년 2,200만원으로 추정
-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결선투표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액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000만원(=2,000만원×1개 선거구×후보자 2명), 2030년 4,400만원(=2,200만원×1개 선거구×후보자 2명)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동수 득표 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700만원, 2030년 9,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억 8,1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 계
선거관리비용	47	-	-	-	50	97
선거비용 보전액	40	-	-	-	44	84
합계	87	-	-	-	94	1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1개의 선거구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 발생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